

무역상무연구
제70권
2016. 5, pp. 159~179.

논문접수일 2016. 05. 11.
심사완료일 2016. 05. 26.
게재확정일 2016. 05. 27.

상품분야 FTA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임목삼* · 최미수**

-
- I. 들어가면서
 - II. FTA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 III. FTA 전문 인력 양성 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 IV. FTA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발전적 제언
-

주제어 : FTA, FTA 활용, 상품분야 FTA 전문 인력, 원산지 정보, 원산지 검증

I. 들어가면서

‘08년부터 무역의존도¹⁾가 100%를 넘나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보화 혁명을 통하여 발전시켜온 ICT능력에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추가 장착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나가고 있다.

세계경제에 있어 한국 주도의 FTA가 가지는 경제적인 의의는 최초로 거대 경제권을 모두 연결한 세계 3위의 경제권역(73.45%)을 완성한다는 데 있다.

최근 침체일로인 국내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FTA 활용 방법은 한·중 FTA를 계기로 완성된 FTA-Hub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FTA인재개발팀장(주저자), E-Mail : ahrtk@korea.com

**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 cms@sdu.ac.kr

1) 무역의존도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액과 수입액, 그리고 국외수취요소소득과 국외지급요소소득의 총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음(통계청, e-나라지표 “무역의존도”, 2015.10).

즉, EU·미국 등 거대 소비시장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ASEAN 10개국과 중국 등의 인적·물적자원을 FTA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종·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사전준비는 FTA 특혜의 정도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과 FTA 활용 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FTA 협정에 있어 상품분야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수출상품의 구조적인 세부특성까지 파악하고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자를 지정·육성하여야 한다.

FTA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관련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누적·배양할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배치하거나, 이러한 능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FTA 전담인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

FTA 협정에서는 WTO에서 규정한 무역구제수단에 더하여 원산지검증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FTA 활용의 기반조성 측면에서 원산지검증을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일부에서는 원산지검증 대응을 수출기업이나 이를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예를 들어, 관세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원산지검증은 수출기업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원재료부터 완제품(또는 부품) 생산과정 전체에 대한 원산지증명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다.

그러므로 원산지검증 대응은 전문가 위탁(일시적인 대응)에 의존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기업 내 원산지정보관리에 기초한 대응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출기업과 연계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전체³⁾가 기업 내부에 원산지 관리 전문 인력을 육성하거나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FTA 전문 인력의 양성을 다루었던 선행연구는 무역 인력 양성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에서 일부 다루고 있었으나 FTA 정보 활용 수출 촉진 측면이었으며, FTA 관련 학위논문에서도 FTA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FTA 활용 증진을 목적으로 접근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FTA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현황을 중심으로 집필된 논문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간 추진되었던 FTA 활용 지원 정책 중 FTA 전문 인력

2)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있어서도 원산지 관리전담자의 지정여부는 인증심사요건 중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원산지 관리 기본 인프라이다.
3) 원산지정보의 보관 및 제출대상자는 수입자와 수출자 및 생산자 뿐만아니라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도 포함되어 있다(FTA 관세법 제12조,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양성 현황을 되짚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 양성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FTA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에 입각하여 재조명하고, 기업의 수요를 관세청 및 통계청과 산업연구원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해 보았다. 이어 제3장에서는 FTA 전문 인력 양성 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전장들의 요약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II. FTA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1. FTA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1) FTA 전문 인력의 정의

우리나라는 '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16년까지 15개 협정을 체결하고 14개 협정을 발효 중이다.

대한민국의 FTA 추진은 EU나 미국보다 늦게 시작하였으나 선진 소비시장과 후발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거대 FTA 권역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TPP·RCEP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새로운 FTA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제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의 주 교역 상대국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존의 교역 조건에 FTA 환경을 고려한 교역조건을 추가하여 거래하는 것이 매매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FTA 원산지를 활용한 수입자는 FTA 관세율의 특혜로 수입관세를 기존의 거래보다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원산지 상품을 의심없이 유통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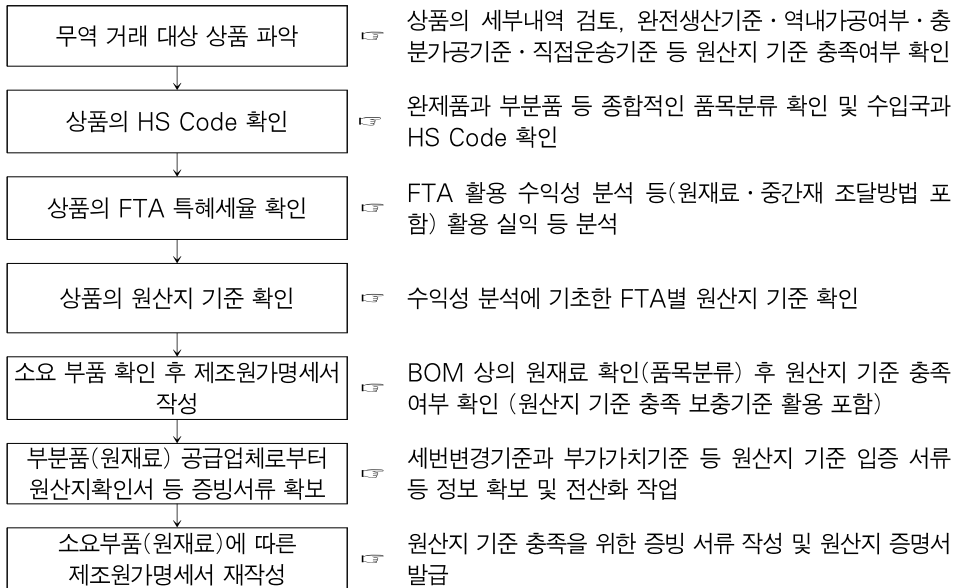
일반적인 무역실무에서 기존의 무역과 FTA 무역의 차이점은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무역계약 이행조건 중 선적서류의 종류에 FTA 원산지증명서⁴⁾를 명시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에 있다.

4) 원산지증명서는 FTA 원산지 증명서 외에도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최빈개발도상국특혜관세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APTA 원산지 증명서...등 여러 가지가 있어, 용도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FTA 원산지의 활용은 서류교부 이상의 의미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증명서와 달리 FTA 원산지 증명서는 소비자 후생복지를 위한 원산지 증명 목적 이외에 수입관세를 경감받는데에도 활용되므로, 관세당국에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원산지 증명서 작성 기준 및 내용적인 원산지 충족여부를 검증하여 FTA 당사국 이외의 관계자에게 FTA 혜택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게 된다.

<표 1> FTA 활용 전략 구상 프로세스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교부되는 FTA 원산지 증명서는 여타의 선적서류와 상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입자 과세당국은 원산지조사(검증)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FTA 특혜를 위하여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혜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A 전문 인력은 무역 전문 인력과 달리 원산지 증명서가 작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입각하여 원산지를 발행하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더불어 FTA를 활용한 원자재나 중간재의 도입경로와 수출지역을 조정하여 수출

상품 가격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FTA 전문 인력은 일시적인 FTA 활용을 위한 협정 상 특혜세율의 조회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이 전부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출상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을 전제로 목표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최근에도 전문무역거래알선업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FTA 원산지의 활용은 이미 제작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특례법 상의 개별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로 구분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에 사용되었을 경우(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 등과 같은 증빙서류가 구비되었을 경우)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FTA 원산지 증명서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져 있음을 전제로 발행된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서이어야만이 FTA 특혜관세를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2) FTA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1) 제도적 측면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입증 책임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자 또는 원산지 증빙 서류의 작성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5년 동안 원산지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⁵⁾

따라서 원산지 정보의 보관 책임 또는 입증 책임이 있는 수출자나 생산자 및 관계자는 모두 원산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⁶⁾

FTA 전문 인력이 보관하여야 하는 정보⁷⁾는 다음과 같다.

수입자는 ①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⁸⁾ ② 수입신고필증, ③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④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5) FTA 협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3년간 보관하도록하고 있는 협정은 한-중 FTA 협정이고,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협정은 한-아세안 FTA 협정이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협정은 한-EU·터키·EFTA FTA 협정이다. 그 외의 협정은 5년간 또는 그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8)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료, ⑥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⑦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이고,

수출자는 ①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 포함) 사본, ② 수출신고필증, ③ 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④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⑤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⑥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⑦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⑧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등이며,

생산자는 ①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②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③ 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④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⑤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⑥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⑦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등 이다.

FTA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입증 서류는 수입자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상이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서류와 다르지 않으나, 수출자와 생산자의 경우는 수출 및 구매내역서류·납품 관련 서류·재고 관리 서류·생산 관리 서류 등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조사(검증) 시 서류제출요청을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요청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평상 시에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¹⁰⁾

따라서 앞서서 언급했었던 수출상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을 검토하여 목표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전문 정보의 응용과 FTA 협정 및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원산지 정보의 보관과 제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FTA 전문 인력을 지정하거나 신규로 채용하여 독립적인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실무적 측면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FTA 활용 애로의 핵심은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의 부족이나, 공급인력의 부족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13년 중소기업체 50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FTA 활용 현황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 원인을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류 절차'(67.8%)

9)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포함.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와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부족’(15.3%)으로 들어 FTA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교육지원¹¹⁾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 후 중소기업의 FTA 컨설팅 지원과 교육지원을 위하여 산업부와 관세청 등은 FTA 컨설팅과 기업임직원 FTA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고, 대학(원)이나 특성화고에도 FTA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FTA 활용 경험이 있는 무역업체 35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 아직도 51.9%의 기업이 원산지관리 업무의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의 부족을 들고 있다.¹²⁾

더군다나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원산지관리 업무의 애로사항을 대부분 전문인력의 부족이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급 수준 이상의 원산지관리 업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필요성 제기하고 있었다.

‘14년 말 관세청 추산, 우리나라 수출기업 91,450개 중 52,421개 업체가 협정 당사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그 가운데 16,668개 업체만이(18%)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FTA 활용 교육과 컨설팅의 대상을 52천여개로 추정하여 지원 인프라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 FTA 전문 인력의 수요와 전망

박근혜 정권의 최우선 국정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실현은 FTA 활용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정책을 통하여 실현이 가능하고, 그 핵심은 FTA 전문 교육과 인력 양성에 있다.

FTA 활용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산업은 상품교역 관련 분야인 제조업이다.

FTA 협정은 상품분야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분야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청·장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창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FTA 고용 유발 산업 제조업이다.

11)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FTA 활용 현황 보고서’, 2013. 7.

12) 이외에도 HS 품목분류 및 원산지기준 이해 부족(41.9%),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 및 관리(32.2%),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 협력사 비협조(25.4%) 등이 애로 사항으로 조사되었다(박지은, “FTA 원산지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트레이드포커스 2016년 9호, 2016. 3, p. 11).

<표 2> 주요 산업별 제조업체 사업체수

(단위 : 개)

제 조 업	1995	1998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제 조 업	52,776	42,246	51,118	56,758	61,785	58,459	57,996	62,376	63,047	63,907	65,389
자 본 재	12,504	10,048	13,028	15,666	17,292	16,514	16,382	18,136	18,645	19,108	19,837
자 동 차	2,059	1,760	2,201	2,710	3,271	3,037	3,019	3,475	3,685	3,869	4,219
조 선	440	440	588	675	1,028	1,104	1,114	1,200	1,286	1,275	1,394
철 도	102	87	58	49	60	65	72	85	76	75	75
항 공	31	33	38	46	59	64	64	68	78	82	98
기타수송장비	96	74	75	51	67	59	65	77	70	80	66
일반목적기계	3,032	2,281	2,943	3,601	4,021	3,893	3,842	4,114	4,210	4,299	4,405
특수목적기계	3,341	2,583	3,456	4,389	4,492	4,125	4,010	4,484	4,509	4,653	4,776
정밀기기	1,135	959	1,176	1,425	1,712	1,691	1,727	1,981	2,054	2,088	2,110
전기기기	2,268	1,831	2,493	2,720	2,582	2,476	2,469	2,652	2,677	2,687	2,694
소 비 재	14,718	11,258	12,684	11,264	12,105	11,257	11,232	11,442	11,502	11,467	11,388
음 식 료	3,598	3,213	3,431	3,897	4,257	4,061	4,169	4,261	4,360	4,423	4,616
담 배	16	14	13	12	12	11	10	12	11	8	9
의 류	5,537	4,097	4,587	3,138	3,264	2,891	2,801	2,796	2,850	2,746	2,554
가족·신발	1,709	1,188	1,330	757	762	738	726	758	774	798	808
인 쇄	1,201	904	1,126	1,286	1,435	1,347	1,354	1,374	1,279	1,256	1,188
가 구	1,349	810	1,058	1,225	1,441	1,307	1,256	1,289	1,254	1,247	1,269
기타 제조업	1,308	1,032	1,139	949	934	902	916	952	974	989	964
I T 제 품	3,082	2,396	3,141	3,166	3,300	2,997	2,943	3,118	3,088	3,078	3,015
가 전	2,240	1,519	1,646	1,604	1,615	1,446	1,436	1,533	1,527	1,536	1,521
통신기기	490	564	1,019	1,138	1,276	1,190	1,186	1,257	1,243	1,258	1,217
컴 퓨 터	352	313	476	424	409	361	321	328	318	284	277
I T 부 품	1,016	848	1,198	1,784	1,991	1,901	1,811	2,035	2,181	2,281	2,379
반 도 체	179	151	214	260	330	330	321	372	362	361	375
디스플레이	n.a.	n.a.	54	234	268	233	214	232	264	259	273
전 지	31	39	63	59	63	57	63	75	88	95	100
기타전자부품	806	658	867	1,231	1,330	1,281	1,213	1,366	1,467	1,566	1,631
중 간 재	21,456	17,696	21,067	24,878	27,097	25,790	25,628	27,645	27,631	27,973	28,770
철 강	655	614	658	1,058	1,296	1,343	1,366	1,517	1,560	1,572	1,607
비철금속	487	401	437	494	545	533	532	601	597	616	635
주 조	305	297	393	434	474	461	446	500	531	526	535
조립금속	4,748	3,866	4,920	7,344	8,492	8,016	7,935	8,866	8,779	8,807	9,014
석유화학	683	545	611	669	863	866	898	988	958	947	1,030
정밀화학	813	846	980	1,269	1,400	1,336	1,335	1,395	1,449	1,462	1,487
의 약	305	296	316	374	411	410	416	439	440	428	421
섬 유	4,847	3,985	4,714	3,696	3,444	3,182	3,122	3,247	3,248	3,229	3,226
고 무	494	460	558	643	694	649	651	676	737	770	802
플라스틱	2,745	2,489	3,307	4,268	4,550	4,286	4,237	4,514	4,559	4,747	4,920
석유정제	55	43	64	80	123	128	130	143	135	131	133
제 지	1,502	1,195	1,304	1,486	1,564	1,489	1,472	1,545	1,520	1,584	1,705
목 재	1,187	665	765	817	849	779	777	788	767	770	803
세 라 믹	530	313	330	260	261	246	240	266	248	247	262
시 멘 트	1,144	970	990	1,187	1,253	1,234	1,244	1,273	1,263	1,279	1,309
유 리	354	295	323	381	433	411	413	425	406	413	446
기타비금속광물	602	416	397	418	445	421	414	472	434	445	435

* 주 : 1)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2010년은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지수”, 2015. 12, p. 139)

제조업체의 수는 제조업체의 규모에 따라 FTA 활용 인력의 수요와 일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는 부분품(원자재) 구매가격과 구매처 정보뿐만 아니라 공급처와 공급가격의 정보, 생산공정 및 제조명세서 등과 같은 핵심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나 원산지 관리 대행자에게 이러한 기밀을 공개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¹³⁾

제조업체의 규모에 따라 FTA 전문 인력 대한 수요가 다양할 것이나, 객관적인 수요인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산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주요산업동향지표’를 활용하여 제조업체의 수요인력을 추정하였다.

‘15년 말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조업체의 전국 사업체수는 ‘13년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370천개로 대규모 제조업체¹⁴⁾가 74천개, 소비재 제조업체¹⁵⁾가 131천개, IT 제품 제조업체¹⁶⁾ 13천개, IT 부품 제조업체¹⁷⁾ 7천개, 중간재 제조업체¹⁸⁾ 145천개이다.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65천개로 대규모 제조업체가 20천개, 소비재 제조업체가 11천개, IT 제품 제조업체 3천개, IT 부품 제조업체 2천개, 중간재 제조업체 29천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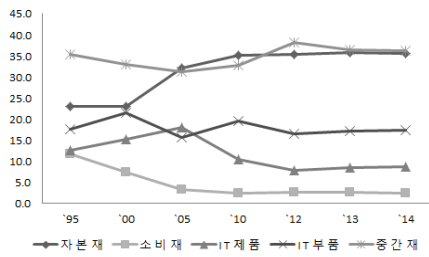
한편, 주요 제조업체 산업별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14년 기준으로 제조업 전체의 수출비중은 99.7%(자본재가 35.5%, 소비재가 2.4%, IT 제품 8.6%, IT 부품 17.3%, 중간재 36.1%)였고, 수입비중은 73.6%(자본재가 23.4%, 소비재가 12.4%, IT 제품 7.0%, IT 부품 11.8%, 중간재 48.1%)로 나타나 제조업 전체의 수출입비중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과 수출입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칠레 FTA가 발효된 ‘04년을 기준으로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입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FTA 수혜 제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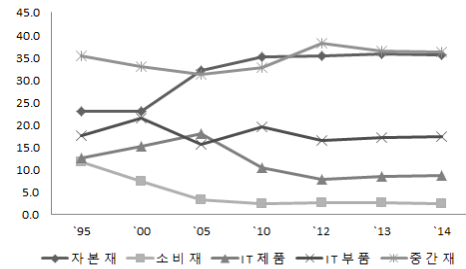
-
- 1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표 3) 원산지 관리전담자 지정 요건에서는 원산지 관리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원산지 관리전담자로 지정이 가능하고, 외부 원산지 전문가(FTA 컨설팅 관세사, FTA 전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14) 자본재 제조업체는 전 제조업체의 14.4%이고 자동차, 조선, 철도, 항공, 기타 수송장비, 일반목적기계, 특수목적기계, 정밀기기, 전기기기 제조업체로 분류된다.
 - 15) 소비재 제조업체는 전 제조업체의 46.1%이고 음식료, 담배, 의류, 가죽·신발, 인쇄, 가구, 기타 제조업체로 분류된다.
 - 16) IT 제품 제조업체는 전 제조업체의 3.6%이고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제조업체로 분류된다.
 - 17) IT 부품 제조업체는 전 제조업체의 0.9%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분류된다.
 - 18) 중간재 제조업체는 전 제조업체의 35.1%이고 철강, 비철금속, 주조, 조립금속, 석유화학, 정밀화학, 의약, 섬유, 고무, 플라스틱, 석유정제, 제지, 목재, 세라믹, 시멘트, 유리, 기타 비금속 광물 제조업체로 분류된다.

<그림 1> 주요 산업별 제조업체 수출입 비중

- 주요 산업별 제조업체 수출비중



- 주요 산업별 제조업체 수입비중



* 주 : 2003년 이전은 UN Comtrade, 2004년 이후는 관세청 데이터(산업연구원, 전게서, pp. 161~165)

이상의 결과에 따라서 제조업체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FTA 전문 인력의 수요를 추정해보면, '13년 전 제조업체 기준으로 많게는 370천개 업체에서 적게는 65천개 업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고, 수출입 비중이 높은 제조업인 자본재와 IT 부품 및 중간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좁혀 수요인력을 예상해 보면, 많게는 226천개 업체에서 적게는 51천개 업체에서 인력의 수급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III. FTA 전문 인력 양성 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1. FTA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법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입증책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또는 원산지증명서류 작성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동안(FTA 협정국 국내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음) 원산지정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관책임 또는 입증책임이 있는 수출자나 생산자, 관련 유통업자는 모두 원산지 관리 업무를 운영하여야 하므로¹⁹⁾ FTA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은 기업 재직자에 대한 교육지원이나 장차 제조업에 취업이 예상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FTA 전문 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가 적지 않기 때문에 FTA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재를 양성

1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하고 있다. 다음은 FTA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FTA 전문 인력 양성 방법이다.

첫 번째는 수출입통관업무에 정통한 관세사에게 FTA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관세사 FTA 컨설턴트를 양성한다(관세사 FTA 컨설턴트 양성, 관세청).

두 번째는 무역업무 또는 FTA 활용 주력산업에 일정기간 이상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FTA 교육을 이수토록하여 FTA 컨설턴트를 양성한 뒤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컨설팅을 수행토록 하거나, 원산지 관리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FTA 활용컨설턴트 양성, 산업부).

세 번째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FTA 무역 전문·심화 교육으로 FTA 전문가가 원산지 관리실무 등을 교육한다(재직자 FTA 활용 교육, 산업부).

네 번째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FTA 과목 또는 과정 개설을 유도하여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FTA 전문 인력 양성, 산업부).

다섯 번째는 FTA 전문지식을 가진 관세공무원이 상설교육장 등에서 FTA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일자리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YES FTA 아카데미, 관세청).

여섯 번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사업²⁰⁾으로 정규교과에 FTA를 편성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지원제도인데, 최근 FTA 특성화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고등학교가 증가세에 있다(중기청)

일곱 번째도 중소기업 인력공급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²¹⁾, 전문 인력 채용지원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²²⁾ 등을 통해 FTA 전문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용부).

여덟 번째는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사업에서 FTA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GTEP, 산업부).

아홉 번째는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체계인 국가 직무능력표준에 ‘15년 원산지 관리가 경영분야(유통분야) 세분류에 신규로 채택되어 향후 무역관련 분야 교과편성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교육부).

마지막으로 자격사업을 통한 원산지 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방법으로, 원산지 관리사와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제도를 통하여 FTA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국제원산지정보원).

이상 10가지의 FTA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는 대부분(4건) 산업부가 주관·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고용부 및 중기청이 추진하는 인력 양성 사업

20) 정규교과에 FTA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

21)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연계 취업목적 교육

22) 중소기업이 유력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FTA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했다.

은 모두 국고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의 FTA 전문 인력 양성은 기관 여력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부처별 FTA 인력 양성 지원 세부방법과 문제점

1) 부처별 FTA 인력 양성 세부방법

FTA는 협정 당사국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등에 특혜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준과 개념을 협정에서 원산지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의 산업조사를 근거로 협의된 품목별 원산지기준도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FTA의 효율적이고 명확한 활용을 위하여 대기업의 경우는 FTA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자본과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충분히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대기업 등에 적극적인 원산지 증명 협조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1)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년부터 FTA 관련 통상교섭의 총괄기능과 국내대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수행해 오고 있다.

산업부의 FTA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은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것과 기업 재직자 또는 취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체적인 FTA 활용 지원의 중심은 기업에게 FTA 전문가를 통하여 직접지원하는 것²³⁾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FTA 전문·심화 교육 지원²⁴⁾ 또는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FTA 등의 교육²⁵⁾지원으로 구분된다.²⁶⁾

23) '16년 기준 FTA 현장 컨설팅 사업으로 OK FTA 컨설팅, 영세기업 원산지 관리 대행 서비스, 찾아가는 FTA 서비스 등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계약된 관세법인을 통하여 OK FTA 컨설팅 사업(250개사당 최대 4백만원, 인건비 기준) 또는 영세기업 원산지 관리 대행 서비스(125개사당 4백만원, 인건비 기준)를 제공하거나, FTA지원센터에 관세사와 원산지 관리사 고용 운영비를 지원(관세사 42명, 원산지 관리사 7명)하여 기업에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두 사업의 운영비 합산 4,100백만원). 이와는 별도로 중기청에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4) '16년 기준 중소기업의 FTA 활용 교육을 위하여 FTA종합지원센터는 원산지 관리실무 과정 등을 65회 제공하도록 계획하였고,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교육·홍보를 17개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두 사업의 운영비 합산 1,732백만원).

25) 25개 대학에 2개 학기 FTA 강좌 운영(학기당 10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13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7개 대학원에도 운영비 등(학기당 20명 기준 4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두사업의 1년 운영비 합산 1,800백만원).

이 같은 FTA 활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FTA를 추진한 경험이 적어 전문가 양성이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무역업무 또는 FTA 활용 주력 산업에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히 교육하여 FTA 컨설턴트로 활용하거나,²⁷⁾ 관세법인에게 업무위탁을 하거나 및 FTA 전문가(관세사, 원산지 관리사)를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한편, FTA 전문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법으로 중기청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 양성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²⁸⁾이나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사업²⁹⁾도 있다.

(2) 관세청

관세청은 관세의 과세 및 수출입통관을 직접 담당하는 FTA 이행기관으로 FTA를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관리하는 기관이다.

관세청 또한 FTA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과 여러가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기본적인 지원사업의 성격은 유사하나 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가가 FTA 담당 공무원 내지는 FTA전문기관의 소속 전문가라는 것이 차이가 있고, 국가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채 기관의 역력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소수의 관세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반면 관세청은 FTA 환경변화와 정보화에 맞춰 컨설턴트의 역량을 매년 제고하는 교육을 통과한 관세사에게 컨설턴트의 자격을 부여하여 지원하고 있다.³⁰⁾

한편, 관세청은 FTA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일선세관(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에 수출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FTA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상설교육장 등을 활용한 FTA 인력 양성도 수행하고 있다.

26) 이와는 별도로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400백만원), 1380 통합콜센터(100백만원), 온라인 교육(150백만원), 차이나데스크 운영(800백만원), 중국과 베트남에 FTA활용지원센터 운영(1,500백만원) 등의 사업도 수행 중에 있다.

27) FTA 컨설턴트를 '12년부터 473명을 양성한 바 있고, '16년 기준 15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인별 2.8백만원 지원, 합산 370백만원).

28) '15년기준 FTA 특성화를 승인받아 수행한 교과는 10개교이다.(전체 162개교, 28,600백만원)

29) 지난 '07년부터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무역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무역실무 등의 교육비 및 마케팅 실습비를 지원해오고 있다(전체 사업비 '14년 4,062백만원, '15년 2,936백만원, '16년 2,696백만원).

30) '16년 기준 YES FTA 컨설팅 지원비 전체예산 1,230백만원.

(3) 고용노동부

고용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FTA 인력 양성에 일조하고 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은 FTA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아니나, FTA나 바이오·소프트웨어와 같이 국정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일부 교육기관에서 FTA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와 마찬가지로 FTA 전문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전문가는 관세사나 FTA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 인력채용지원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 등)이 석·박사학위 소지자, 관세사, 원산지 관리사, 변호사, 3년 이상 재직이력이 있는 전문가 또는 책임연구원을 고용할 경우 연 1천여만원 지원하는 제도이다.

(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는 이상의 경우와 달리 FTA 인재양성을 위하여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체계³¹⁾를 통하여 FTA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초를 구축하고 있다.³²⁾

NCS는 대학이 아닌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최소 6개월에서 4년의 장기 교육과정과 인증된 교육기관을 통하여 국가수준에서 역량을 인정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계획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현재, 정부에서 공사 및 공공기관 취업시 NCS 직무능력을 취득한 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의 경우에도 NCS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무역관련 학과에서도 무역관련 NCS 교육과정의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3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70~'80년대 산업화 시대 공급자 중심의 인재양성방식을 탈피하여 산업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2) 원산지 관리분야의 자격은 관세사와 원산지 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가 있다.

현재 NCS 무역관련 교육과정으로는 '14년 개발된 수출입관리와 '15년 개발된 원산지 관리³³⁾ 분야가 있고, 직무능력에 따라 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에서 도입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2) FTA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문제점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FTA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은 기업에 직접 FTA 활용 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컨설턴트 교육을 지원하는 것과 기업 재직자 또는 취업 예정자에게 기업 내부에서 원산지 관리를 수행하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원되는 국가예산의 확보와 집행이 다를 뿐이지 한정되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결과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FTA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하는 것 보다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나 노하우가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가지원에 의존하여 수혈되어야 하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정되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지원예산의 배분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FTA 국내대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대책은 상품분야의 활용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산업부는 서비스나 투자 및 분쟁해결과 같은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TA를 활용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나 국민은 특혜세율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로 다루는 관세청에서 FTA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관세청의 정체성은 국경을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공평한 과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으므로,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통하여 교육지원이나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인 FTA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지원 제도는 산업부(중기청)와 관세청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육부의 NCS를 통해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33) NCS에서 원산지 관리는 FTA 활용 등을 통한 기업의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재료 구매부터 물품 수출·수입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서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원산지 검증 대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로서 직무를 정의하고 있다(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상공회의소,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 표준 및 활용 패키지 소분류 : 무역·유통관리 세분류(직무) : 원산지 관리, 2015, p. 35).

이는 FTA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 FTA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들은 NCS에서 원산지 관리를 도입하기 이전에도 관련 자격 취득하여 교육의 효과를 개인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IV. FTA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발전적 제언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중심의 무역환경을 기업에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FTA를 바라보는 시각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FTA는 국가의 조력에 의해 활용되는 필수적인 무역절차가 아니라 국제계약당사가 선택한 계약조건에 따라 종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이다.

수출자는 무역계약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원산지 관리가 수행된 상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향후 광역 FTA의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현행과 같이 특정한 국가 간 원산지증명을 필요로 하는 FTA 활용 환경에서 역내국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원산지증명 환경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미래의 FTA 활용에 있어 관건은 FTA가 확산됨에 따라 연계된 협정 간의 특혜세율과 원산지기준 및 산업환경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생산기지 및 수출국을 글로벌하게 구축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양산에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FTA 저변확대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교육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원재료나 중간재를 다양한 역내외국에서 조달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시켜 수출할 수 있는 FTA 활용 기획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원산지 관리사 자격의 목적 중 하나는 FTA 원산지 활용 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있다.

따라서 원산지 관리사는 원산지증명업무를 넘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수집을 국제적인 안목으로 확대하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인 FTA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을 위한 전문지식의 학습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FTA가 더욱 확산되고 보편화되면 제조업 말단에서부터 수출기업에 까지

단절되지 않은 원산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 관리지식은 특성화고교의 전문교과부터 보편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상식수준으로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여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서양을 연결하는 FTA 허브로서, 또한 FTA를 활용한 **Global Supply Chain**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게 안정적인 원산지증명환경이 제공된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증명과 수출자와 관련 기업 모두가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산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FTA를 통하여 지정학적 가치(**FTA Hub**)를 활용한 세계적인 경쟁우위산업의 확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양산되는 제품의 합리적인 가격경쟁력으로 교역증진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구본익, “우리나라의 FTA 활용증대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2. 12.
- 김연경, “FTA 이행에서 섬·의류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문제와 대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3. 2.
- 김우태, “FTA 원산지규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5. 12.
- 김희진, “부산지역 자동차부품 협력업체의 FTA 원산지 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5. 2.
- 노민선, “제3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5. 11.
- 박광서·유광현, “글로벌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2.
- 박지은, “FTA 원산지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트레이드포커스 2016년 9호, 2016. 3
- 박철구, “원산지정보의 유통 촉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3. 2.
- 심재권, “FTA 활용역량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3. 8.
- 어명근·이병훈,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96호, 농촌경제연구원, 2014. 10.
- 왕조옥, “한·중 FTA 원산지규정에 있어서 누적기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5. 10.
- 이시균·방글·공정승, “중장기 산업별 취업자 수 전망 2014-2024”, 고용이슈 한국고용정보원, 2016. 1.
- 임목삼,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 38권 5호, 한국무역학회, 2013.
- _____, “중소기업의 FTA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4권 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 임목삼·임성철, “한·중 FTA와 기체결 주요 FTA 원산지 규정과 절차 비교 연구”,

- 무역상무연구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2.
- 임목삼·최미수 “한국의 FTA 효과와 추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호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5.
- 정성엽, “FTA 관세혜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정보 관리 전략”,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5. 12.
- 정지곤, “한-중 FTA 원산지규정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5. 8.
- 조규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컨설팅 과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2. 12.
- 최양식, “FT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4. 6.
- 최집렬, “중소기업의 기업문화와 FTA 인력 양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5. 8.
- 한상현, “FTA시대 전문자격증으로서 원산지 관리자 자격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2. 5.
- 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지표, 2015. 12.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FTA 활용 현황 보고서”, 2013. 7.

ABSTRACT

Development plans of FTA Experts in Product Areas

Mok-Sam LIM · Mi-Soo CHOI

Companies do not be resolved by the FTA services of external aid should be operational by assigning dedicated personnel inside the company.

FTA is a choice, not an essential trade agreement requirements.

If the exporter contracts to provide a certificate of origin in trade agreements, it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originating management is performed.

When considering the future trend of spreading wide FTA, it should be extended to one year to take advantage of the FTA Certificate of Origin environments utilizing a comprehensive environment for regional countries that require proof of origin between certain countries, such as current.

FTA utilization of the future is to utilize the GVC(Global Value Chain) efficiently.

In other words, the expansion of the consumer market and take advantage of an efficient production base across borders.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re needed development of the FTA utilization promotion and FTA experts.

The experts studying how to procure raw materials or intermediate goods exports in a variety of regional foreign countries, to meet the rules of origin is required for a successful FTA utilization.

One of the objectives of Origin managers are qualified experts in the country of origin can take advantage of the FTA plan.

Therefore, managers of origin shall collect their ability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industry as an international business perspective beyond the Certificate of Origin.

In addition, it should be in their best learning expertise for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ountry of origin control system in an effort to effectively perform its international FTA utilization.

Once the FTA is more widespread in the future and build a common origin

information it must not be disconnected until the export enterprises from terminal manufacturers systematically.

Therefore origin management is preferred by expanding the knowledge base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ommon sense to the universal subject of specialization from professional schools to promote the relevant departments so that they can be opened in a college or university.

An FTA hub linking East and West, also need the confidence that in order to become a center of Global Supply Chain Using an FTA Certificate of Origin and stable environment for importers to import products from the country offers.

Certificate of Origin and all of them thoroughly exporters and compani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origin and should create an atmosphere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 origin verification.

Korea shall endeavor to elicit a geopolitical value (FTA Hub), as well as securing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industry leverage, trading at a reasonable price competitive products thereby enhancing production an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FTA.

Keywords : FTA, FTA Experts in Product Areas, Origin Information, Origin Verification